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218 호 2020. 2. 13.(목)

규 칙

-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52호[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]..... 1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30호[도로명주소 부여 고시]..... 3

안 내	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
--------	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홍보실 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
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등권 (인)

2020년 2월 13일

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52호

울산광역시 복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

울산광역시 복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보건소의 주무담당주사”를 “보건행정과장, 보건행정과장
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의 주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 ◆

1. 개정이유

- 보건소의 현재 직제에 맞는 직무대리 규정 미비 조항 정비

2. 주요내용

- 현재 보건소 직제에 따라 직무대리 규정 정비(제2조제2항제2호)
 - 보건소장 사고 시 보건행정과장이 직무대리 하도록 규정 정비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- 30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1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-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2로 16 외 2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 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0. 2. 13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	도로명주소	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
1	울산광역시 북구	매곡중산 지구 25B 9L	울산광역시 북구	매곡2로 16	2020-02-13	인근매곡1로위치예측 성맞연계성반영	2018-05-10
2	울산광역시 북구	달천동 428-7 외 2	울산광역시 북구	달천도담길 19-2	2020-02-13	북이것들고넉넉한길이 라는뜻	2011-08-16
3	울산광역시 북구	진장명촌 지구 18B 33L	울산광역시 북구	진장20길 27	2020-02-13	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 하는이름으로누구나친 숙한이름이므로도로명 을부여.	2004-12-27